

#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재자원화 시설 지원) 공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및 제18조(재자원화 등)에 따라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3. 12.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확충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생산(공정개선·자동화 포함), 측정·분석, 안전·환경 등과 관련한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지원

##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국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또는 생산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붙임2) 상 소분류 122(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중분류 21(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2(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26년 3,524백만원
  - (일반지원) 3,024백만원 규모, (별도지원) 500백만원 규모
  - \* 별도지원 : 희토류 관련 사업 및 생산준비사업에 대한 지원(붙임3 참조)
  - \* 지원규모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반지원과 별도지원 중복신청 불가
- (지원분야) 아래 용도 중 기업이 필요한 재자원화 설비\*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신청(단순 소모품, 토지·건물 구입비, 설비 설치비 및 설계비 제외,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설비(시설·장비 등) 구매비만 신청 가능)
  - \* 기업당 최대 5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에 기여 가능한 설비여야 함
  - \* 안전·환경설비는 단일 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생산 설비에 연계하여야만 신청 가능

구 분	지원 내용 (예시)
① 생 산	(전처리) 파쇄기, 분쇄기, 선별기(파분쇄 공정 이후) 등 (고순도화) 침출 탱크, 용매추출기, 전해채취 설비, 농축기, 여과기, 필터 프레스, 원심펌프 등 (공정개선·자동화) 공정 개선, 자동화 설비 등
② 측정·분석	형광 X-선 분광 분석기(XRF), 유도결합플라즈마(ICP), 입도분석기(PSA), X-선 회절 분석기(XRD) 등
③ 환경·안전	(① 생산 설비와 연계하여야만 신청 가능) 집진기, 폐수처리 설비, 화재 감지 및 자동소화 시스템, 방폭 설비 등

○ (지원기간) 협약일 ~ 2026.11.30.

\* 협약종료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 단,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망 기여도가 탁월한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

\* 하기 보조율은 최대치 기준이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기업의 보조율은 달라질 수 있음

〈 총사업비 구성 비율 〉

신청기업 유형	국고보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70% 이하	30% 이상
중견기업	60% 이하	40% 이상
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 3.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기간) 2026. 03. 12(목) ~ 2026. 04. 10(금)

○ (접수기간) 2026. 03. 23.(월) ~ 2026. 04. 10(금) 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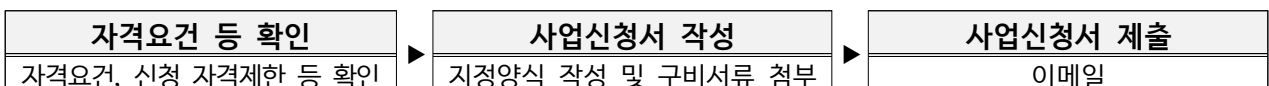
\* 신청은 본 사업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인정

\*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전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서류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접수마감 시한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업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 사업 대표 이메일(urban-mining@komir.or.kr)로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정상 접수 시, 전담기관에서 해당 이메일로 “접수 확인” 내용 회신 예정으로 “접수 확인”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전화 문의(☎033-736-5243) 요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1식 [붙임1]
  - \*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e나라도움의 사업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의 임의변경 불가
- (신청금액) 신청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함

## 5. 지원자격

- 신청기업은 특수분류(붙임2) 상 소분류 122(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중분류 21(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2(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함
  - \* [붙임2]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정의서’ 내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에 특수분류(소분류) 기재
- 다음의 하나에 해당(공고일 기준)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함

### [ 참여제한 기준 ]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 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 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공고일 이전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인 경우

## 6. 주의사항

◆ 본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신품 구매) 신청 설비는 신품만 가능하며, 중고품은 신청 불가
- (신청설비수의 제한) 신청 설비의 수는 최대 5건까지만 가능
-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 등에 대해 신청건수별 본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이상을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 허위·거짓 견적서 제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징역/벌금), 경제적 제재(환수/제재부가금), 행정적 제재(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해당기업의 내규 등에 따라 구매 투명성을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 시 계약 행위에 대한 증빙 제출
  - \* 사업계획서 내 계약 및 구매 투명성 확보 계획 기재
- (사전 계약체결 불가) 협약 체결 이전에 설비 등 판매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신청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협약 체결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 승인 취소
- (선급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체결 이후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금 요청 시, 계약체결 기간에 가산기간(60일)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는 기업 자부담)
  - \* 선급금은 선정된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급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설비 입고 및 검수·검사 이후 보조금을 일괄 신청
- (사후관리)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보고서를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설비는 전담기관이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식을 부착하여 사후관리 진행
- (설비 처분제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설비에 대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 (인·허가 사항)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관련 인·허가 취득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가능

- (사업관리)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본 공고문 미숙지 및 협약서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7. 추진절차

절차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지원기업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기준 승인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신청 공고 및 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 제출</li> </ul>
↓			
지원대상 선정(~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위원회 참석</li> <li>■ 보조사업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토</li> <li>■ 정량 평가(전담기관)</li> <li>■ 현장 조사(전담기관)</li> <li>■ 정성 평가(관리위원회)</li> <li>■ 보조사업 승인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조사 수감 (정량평가 통과기업)</li> <li>■ 정성평가 참석 (수행책임자에 의한 발표)</li> </ul>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교부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신청</li> <li>■ 보조금 선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 서류 제출</li> <li>■ 사업 수행</li> </ul>
↓			
검사 및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상황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검수 시행</li> <li>■ 진도관리 및 잔금 지급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검사·검수 수감</li> </ul>
↓			
사업완료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교부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교부 신청</li> <li>■ 보조금 잔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급 신청</li> <li>■ 사업성과 증빙자료 준비</li> </ul>
↓			
보고서 제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상황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결과보고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결과보고서 작성·제출</li> </ul>
↓			
결과평가 및 정산 (~'2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위원회 참석</li> <li>■ 사업 결과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평가(관리위원회)</li> <li>■ 사업 결과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평가 수감</li> </ul>
↓			
사후관리 ('27.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실시(5년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5년간)</li> </ul>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선정 및 평가

### 〈 지원 대상 선정 절차〉

공고·접수	사전검토	정량평가	현장조사	정성평가	협약체결	사업추진
신청서 제출	자격요건 검토	계량평가	대상기업 현장확인	비계량평가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사업추진 및 관리
신청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관리위원회	전담기관-기업	전담기관-기업

※ 선정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현장조사 및 정성평가 대상기업, 최종 선정기업 및 후보기업은 전담기관에서 별도 연락 예정

- (사전검토)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부적합 기업 탈락 조치 등
- (정량평가) 전담기관에서 △광종별 중요도, △용도별 중요도, △생산단계별 중요도 △국내공급망 기여도에 대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위원회가 확인 [붙임3]
  - \* 정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비의 N배수 범위의 신청 과제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정성평가 대상 선정
- (현장조사)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정성평가 대상 기업 현장조사 실시
- (정성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효과성, △사업계획 구체성에 대하여 정성평가 실시 [붙임3]
  - 신청기업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 시행,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고려해 ‘선정기업’과 ‘후보기업\*\*’ 분류
    - \* (일반지원)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점수 × 0.3) + (정성평가점수 × 0.7) + 가·감점
    - (별도지원)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점수 × 0.4) + (정성평가점수 × 0.6) + 가·감점
    - \* 동점의 경우, (정량) 광종별 중요도>용도별 중요도>생산단계별 중요도>국내공급망 기여도, (정성) 사업목적 부합성>사업의 효과성>사업계획의 구체성 순으로 우선순위
    - \*\* 旣선정기업의 사업 포기, 지원금액 변동 등으로 지원예산 추가 발생 시 他선정기업의 조정보조금 배분(우선배정) 및 후보기업 등에 추가 배정

## 9. 협약체결

- 최종 선정 후, 사업계획서 등 협약체결 관련 서류가 구비 완료된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진행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반영,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 제출

-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지원기업으로부터 협약서 및 부대서류(신규개설 통장 사본, (선금요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선금요청시)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선금요청시) 국고보조금(선금) 지급신청서 등)를 전담기관에 제출
  - \* 전담기관에 선금 요청 여부는 기업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선금요청기업은 협약기간에 가산기간(60일)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必
- 증빙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 \* 단,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건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이후 관련 인허가 승인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10. 진도관리

- 단발성 장비 구매가 아닌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등의 지원건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지원기업 진도관리(월간보고 및 필요시 현장방문 등)를 통해 수행 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 \* 단, 설계·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설비 구매건은 진도관리 대상이 아님

## 11. 결과보고 및 평가

- 협약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 전담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 평가 실시
  - \* 결과평가 결과 “적정”, “부적정”으로 분류(피평가자 불수용 시 결과통보 후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
  - \* “부적정” 판정된 지원기업 3개년도 사업신청 제한,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국고 보조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 12. 보조금 산정·지급 및 관리

- (보조금 산정·지급) 본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특정 기업의 중도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지급
  - (기초보조금 지급) 선정 당시 결정된 기업별 최대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초보조율(예: 35~55%)을 적용한 금액을 일차적으로 지급

- (조정보조금 배분)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 기준 전체 사업 예산 중 집행 잔액(잔여예산 및 중도포기 기업의 예산 등)을 확정하고, 잔여예산을 당초 선정 시 배정된 기업별 보조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추가 지급
  - \* 단,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총 보조금은 선정 당시 결정된 최대 보조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선금 요청 기업) 정해진 기초보조금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설비 입고 또는 설치 공사 완료 후 검사·검수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된 지원기업에 50% 잔액 지급
- (선금 미요청 기업) 설비 입고 또는 설치 공사 완료 후 검사·검수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된 지원기업에 기초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최종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사업비 정산내역서 제출必

### 13.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사후관리)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전담 기관에 제출
  - 사업 종료 다음연도의 6월말까지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성과활용) 지원기업의 성과물은 전담기관이 본 사업의 홍보 및 우수 사례 선정, 선도모델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1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전담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협약을 위반\*한 지원기업에게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거짓 신청, 보조금의 지급목적 외 사용, 지급요건 불충족 등
- (공고문의 해석) 본 공고문의 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 15. 문의처

- (전담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 대표 이메일([urban-mining@komir.or.kr](mailto:urban-mining@komir.or.kr))을 통해서 문의 및 답변

**붙임 1**

**신청 관련 제출서류**

구분	순번	첨부서류		비고
작성서류	1	필수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2	필수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3	필수	[별지 제3호]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4	필수	[별지 제4호]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요약서	
	5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동의서	
구비서류	6	필수	사업자등록증	
	7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8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9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0	필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11	필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확인서	
	12	필수	신청설비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 본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제출 필요
	13	해당시	가점 현황 증빙 사본	※ 가점, 감점 및 참여제한 기준 참고

## 붙임 2

##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대분류(4)	중분류(10)	소분류(32)	업종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11차)
1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수집·운반 ·보관 및 전처리업	12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해체·선별 및 전처리업	122 핵심광물 재자원 화 원료 전처리업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를 대상으로 파·분쇄, 방전·열처리 등의 안정화, 건조, 세척 등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분말·조각 등으로 물리적 파쇄, 잔류 전기 제거, 휘발성 유기물(전해액 등) 증발, 수분 제거, 오염물·먼지·불순물 제거 등	25921 금속 열처리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 핵심광물 재자원화 제조업	21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11 재자원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중간소재 제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의 함유 원료(폐배터리 등)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중간소재(추가 가공이 필요한 블랙파우더, 블랙매스 등)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12 재자원화 구리 중간소재 제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구리 함유 원료(E-Waste 등)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중간소재(추가 가공이 필요한 블랙카파 등)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13 재자원화 백금족 중간소재 제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백금족 함유 원료(폐촉매 등)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중간소재(추가 가공이 필요한 분말담체 등)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14 재자원화 희토류 중간소재 제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희토류 함유 원료(폐희토자석 등)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중간소재(추가 가공이 필요한 폐희토자석 분말, 폐희토자석 블록 등)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2 비금속류 원료재생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15 재자원화 텅스텐 중간소재 제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텅스텐 함유 원료(폐초경공구 등)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중간소재(추가 가공이 필요한 텅스텐 분말 등)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19 기타 재자원화 주요광물 중간소재 제조업	주요광물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기타 주요금속 함유 원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중간소재(추가 가공이 필요한 소재)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2 핵심광물	221 재자원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을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을	20119 기타 기초

대분류(4)	중분류(10)	소분류(32)	업종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11차)
	재 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최종소재 제조업	추출하기 위해 제정련을 수행하여 최종소재(추가 가공처리 없이 전방 산업에 바로 사용가능한 탄산리튬, 수 산화리튬, 황산니켈, 산화코발트, 황 산망간, 흑연계 탄소소재 등)를 생 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22		재자원화 구리 최종소재 제조업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제정련을 수 행하여 최종소재(추가 가공처리 없 이 전방산업에 바로 사용가능한 전 기동 등)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23		재자원화 백금족 최종소재 제조업	백금족을 추출하기 위해 제정련을 수행하여 최종소재(추가 가공처리 없이 전방산업에 바로 사용가능한 백금, 팔라듐, 로듐 등)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24		재자원화 희토류 최종소재 제조업	희토류를 추출하기 위해 제정련을 수행하여 최종소재(추가 가공처리 없이 전방산업에 바로 사용가능한 희토류 산화물 등)를 생산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25		재자원화 텅스텐 최종소재 제조업	텅스텐을 추출하기 위해 제정련을 수 행하여 최종소재(추가 가공처리 없이 전방산업에 바로 사용가능한 텅화텅스 텐 등)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29		기타 재자원화 주요광물 최종소재 제조업	기타 주요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제 정련을 수행하여 최종소재(추가 가 공처리 없이 전방산업에 바로 사용 가능한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일반 지원

-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의 종합평가점수 × 0.3) + (정성평가점수 × 0.7) + (가감점)
- 정량평가 (30%)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계 량	광종별 중요도 (30)	- 신청기업이 속한 재자원분야(핵심광물) 중요도 순으로 차등하여 정량 평가한다. ▶ 이차전자·희토자석(30), E-Waste·폐촉매·폐초경공구(25), 이차전자·희토자석·E-Waste·폐촉매·폐초경공구 외(20) * 신청기업이 복수의 분야를 영위할 경우, 신청설비를 기준으로 해당분야를 정한다. * 복수의 분야를 영위하는 신청기업의 신청설비가 각각 다른분야에 해당할 경우, 신청분야별 평균으로 배점한다.
	용도별 중요도 (30)	- 신청 대상 설비의 용도별 중요도 순으로 차등하여 정량 평가한다. ▶ 생산(30) > 측정·분석(20) = 안전·환경(20) * 복수 신청의 경우 신청분야별 평균으로 배점한다. * 안전·환경시설은 단일 신청 불가하며 위 생산 설비에 추가하여 복수 신청만 가능
	생산단계별 중요도 (30)	- 신청기업이 속해있는 생산 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정량 평가한다. ▶ 최종소재(30) > 중간소재(25) > 전처리(20) ▶ 다수단계를 영위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최하류 단계를 적용한다.(예. 중간소재·전처리를 모두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간소재로 배점)
	국내공급망 기여도 (10)	- 신청일 직전년도 신청기업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정량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기업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제품 총 판매량에서 내수판매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10),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9),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8),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6),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5),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4),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3), 5% 이상 10% 미만인 경우(2), 5% 미만인 경우(0)

○ 정성평가 (70%)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계량	사업목적 부합성 (40)	- 신청된 사업계획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부합하는 정도를 정성 평가한다.
	사업의 효과성 (30)	- 지원대상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정성 평가한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30)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정성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척도						
사업목적 부합성 (40)	- 사업목적 부합정도 - 신청설비 도입 필요성 -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기여 정도	매우 적절	적절	약간 적절	보통	약간 미흡	미흡	매우 미흡
		40	35	30	25	20	15	10
사업의 효과성 (30)	- 사업추진에 따른 회수율 향상, 원가 절감 등 생산성 개선, 수입대체 효과 등	매우 적절	적절	약간 적절	보통	약간 미흡	미흡	매우 미흡
		30	25	20	15	10	5	0
사업계획의 구체성 (30)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체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매우 적절	적절	약간 적절	보통	약간 미흡	미흡	매우 미흡
		30	25	20	15	10	5	0

- 정성평가 채점기준

구 분	채점기준
매우 적절	해당 지표의 목표 달성이 확실하고, 사업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혁신적임
적절	해당 지표의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약간 적절	해당 지표의 목표가 적절하고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나,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일부 결여됨
보통	해당 지표의 내용이 타당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함
약간 미흡	해당 지표의 목표와 계획이 일부 제시되었으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온적이며 보완사항이 많음
미흡	지표 달성 의지가 낮거나,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매우 미흡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거나 지표와 무관함

○ 가점, 감점 및 참여제한 기준

- 가점

항 목	가 점	비 고
신청기업의 재자원화 대상광물이 희토류 중 Nd, Dy, Tb 중 하나를 포함한 경우, 종합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1점	증빙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책 R&D 및 정부·공공기관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연계된 신청건의 경우, 종합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1점	증빙제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업의 경우, 종합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2점	-

- 감점

항 목	감 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종합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3점

- 참여제한

항 목	내 용
전년도 사업결과평가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받은 기업은 3개년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참여 제한
2년 연속 본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개년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참여 제한

## □ 희토류 관련 사업 및 생산준비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

### ※ 정 의

- 희토류 관련 사업 : 폐희토자석, 희토자석 공정부산물 등을 원료로 희토류를 회수/추출하는 사업
- 생산준비사업 : 신규 재자원화 부문에 진출하여, 재자원화 플랜트 건설이 착공되었거나 공고일 기준 당해 연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

※ 일반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의 종합평가점수 × 0.4) + (정성평가점수 × 0.6) + (가감점)

### ○ 정량평가 (40%)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계 량	광종별 중요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업이 속한 재자원분야(핵심광물) 중요도 순으로 차등하여 정량 평가한다.</li> <li>▶ 이차전자·희토자석(40), E-Waste·폐촉매·폐초경공구(35), 이차전자·희토자석·E-Waste·폐촉매·폐초경공구 외(30)</li> <li>* 신청기업이 복수의 분야를 영위할 경우, 신청설비를 기준으로 해당분야를 정한다.</li> <li>* 복수의 분야를 영위하는 신청기업의 신청설비가 각각 다른분야에 해당할 경우, 신청분야별 평균으로 배점한다.</li> </ul>
	용도별 중요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대상 설비의 용도별 중요도 순으로 차등하여 정량 평가한다.</li> <li>▶ 생산(30) &gt; 측정·분석(20) = 안전·환경(20)</li> <li>* 복수 신청의 경우 신청분야별 평균으로 배점한다.</li> <li>* 안전·환경시설은 단일 신청 불가하며 생산 설비에 추가하여야만 신청 가능</li> <li>* 준상업용 플랜트, 파일럿 플랜트도 신청설비 용도에 따라 위 기준을 적용한다.</li> </ul>
	생산단계별 중요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업이 속해있는 생산준비 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정량 평가한다.</li> <li>▶ 생산 플랜트 구축(30) &gt; 상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준상업용플랜트(25) &gt; 기술 가능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파일럿 플랜트(20)</li> </ul>

○ 정성평가 (60%)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계량	사업목적 부합성 (40)	- 신청된 사업계획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부합하는 정도를 정성 평가한다.
	사업의 효과성 (30)	- 지원대상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하여 정성 평가한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30)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정성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척도						
사업목적 부합성 (40)	- 사업목적 부합정도 - 신청설비 도입 필요성 -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기여 여부	매우 적절	적절	약간 적절	보통	약간 미흡	미흡	매우 미흡
		40	35	30	25	20	15	10
사업의 효과성 (30)	- 사업추진에 따른 회수율 향상, 원가 절감 등 생산성 개선, 수입대체 효과 등	매우 적절	적절	약간 적절	보통	약간 미흡	미흡	매우 미흡
		30	25	20	15	10	5	0
사업계획의 구체성 (30)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제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 평가	매우 적절	적절	약간 적절	보통	약간 미흡	미흡	매우 미흡
		30	25	20	15	10	5	0

- 정성평가 채점기준

구 분	채점기준
매우 적절	해당 지표의 목표 달성이 확실하고, 사업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혁신적임
적절	해당 지표의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약간 적절	해당 지표의 목표가 적절하고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나,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일부 결여됨
보통	해당 지표의 내용이 타당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함
약간 미흡	해당 지표의 목표와 계획이 일부 제시되었으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온적이며 보완사항이 많음
미흡	지표 달성 의지가 낮거나,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함
매우 미흡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거나 지표와 무관함

○ 가점, 감점 및 참여제한 기준

- 가점

항 목	가 점	비 고
신청기업의 재자원화 대상광물이 희토류 중 Nd, Dy, Tb 중 하나를 포함한 경우, 종합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1점	증빙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책 R&D 및 정부-공공기관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연계된 신청건의 경우, 종합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1점	증빙제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업의 경우, 종합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2점	-

- 감점

항 목	감 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종합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3점

- 참여제한

항 목	내 용
전년도 사업결과평가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받은 기업은 3개년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참여 제한
2년 연속 본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개년도 사업 신청을 제한한다.	참여 제한